

「구미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
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4년 5월 24일

나. 발 의 자: 이상호, 강승수, 김민성, 김영길, 김영태, 김원섭,
김재우, 김정도, 박교상, 박세채, 소진혁, 신용하,
이명희, 이정희, 이지연, 장미경, 장세구, 정지원,
추은희, 허민근 의원(20명)

다. 회부일자: 2024년 5월 24일

라. 상정일자: 2024년 6월 4일

제277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이 상 호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상위법 「근로복지기본법」 상 위탁 근거 문구를 일치시키고,
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서 기 규정한
수탁자의 책무, 지도·감독, 위탁계약의 취소·해지에 관한 사항을
삭제하여 법적 실익을 찾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‘관리 및 운영’ 의 위탁을 ‘운영위탁’ 으로 변경하고 비영리 단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규정(안 제5조)
- 제7조(수탁자의 의무) 조문 삭제
- 제9조(감독) 조문 삭제
- 제10조(위탁계약의 해지) 조문 삭제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근로복지기본법」 제29조
 -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14조, 제16조, 제21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임 기 동

○ 본 조례안은

- 공단동에 위치한 구미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의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,

- 「근로복지기본법」 제29조¹⁾에 따라 공동세탁소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‘운영의 위탁’ 으로 규정하여 법적 체계의 일치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
- 또한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규정된 수탁 기관의 의무, 위탁의 취소,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 등 중복되는 규정의 삭제로 행정의 효율성·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 락

5. 토 론 요 지: 생 락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없 음

7. 심 사 결 과: 원안가결

1) 제29조(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)

-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근로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-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